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. 11. 21 선고 2024가단2595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10. 31.

판결 선고 2024. 11. 21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제3층 D호 철근콘크리트조 37.3㎡를 인도하고,
나. 2024. 4. 8.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의 주문 제1의 가.항 기재 오피스텔에 관한 2024. 3.경 임대차계약(보증금 300만원, 월 차임 40만 원)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인도 및 차임 청구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박민수